

기타수입금 운용관리 규정

제정 2012.05.09.

개정 2014.06.25.

개정 2016.11.29.

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(이하 '장애인체육회'라 한다)의 발전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타 수입금(이하 '수입금'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4.6.25., 2016.11.29.〉

제2조(수입금의 조성) 수입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후원금 및 격려금
2. 장애인고용장려금(장애인체육회 직원채용현황에 근거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에 의해 발생한 지원금)
3. 기타 수입금 〈개정 2014.6.25.〉

제3조(수입금의 사업) 수입금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
2. 장애인 생활체육체험교실 등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
3. 특수학교 및 장애학생체육(꿈나무) 육성사업
4.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 등 스포츠 전문인력 육성사업
5. 종목별 장애인선수 훈련지원 사업
6.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시설에 관한 보수유지 및 관리
7. 장애인체육회 직원 교육 및 연수사업
8. 장애인체육회 직원 복리후생 지원 사업
9.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직원 채용사업
10. 국내·외 유관단체 간 장애인체육교류사업
11. 위·수탁시설 운영관리사업
12. 기타 장애인체육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〈개정 2014.6.25.〉

제4조(수입금의 운영원칙) ① 수입금은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 원칙을 적용한다.

② 수입금의 수입 및 지출 절차는 장애인체육회 처무규정의 제 규정을 적용한다. <개정 2014.6.25.>

제5조(수입금의 관리운영)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 운영한다.

제6조(사무처리) 수입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무처리는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에서 담당한다. <개정 2014.6.25.>

부 칙 <2014.6.25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6.11.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